멀티미디어공학과 졸업요건 내규

제 1 조 (목적) 본 내규는 (구)멀티미디어공학과 재학생의 학사 졸업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졸업요건) 멀티미디어공학과 졸업과 학사취득을 위해서는 한성대학교 학칙에 따른 졸업학점을 충족하는 것 이외에 다음 중 1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 1 항 정보처리기사 또는 이에 상응한 자격증 취득자
(자격증 종류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제 2 항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이수자 (교과과정 4학년 1학기 개설)

제 3 항 교내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
(공모전 수상결과를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사함)

제 4 항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
- 졸업논문 희망자는 '졸업논문에 관한 세칙'(3-3-08)에 의거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졸업예정 학기말까지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 논문 제출자격은 졸업예정학기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졸업학점을 충족한 수료자로 한다. (세칙 제3조)

제 5 항 졸업시험 합격자
- 학과 교수회의 논의에 따라 졸업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수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내규는 2017년 3월 7일부터 시행하고, 2017년도 1학기 졸업 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멀티미디어공학과 졸업요건 내규 개정안
(2017.03.07)

구 졸업요건	신규 졸업요건
1. 정보처리기사 나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 취득자 (자격증 사본을 전공사무실로 제출한 자에 한함) 2. 멀티미디어 공학과 표안에 있는 교과목 중 1과목 A 이상 (성적표 사본을 전공사무실로 제출한 자에 한함) 교과목명 <변경 전> 게임 프로그래밍 영상제작 프로젝트 멀티미디어처리 ———————— <변경 후> - 안드로이드프로그래밍1 - 웹프레임워크1 - 디지털콘텐츠 기획 및 제작 3. 캡스톤디자인2 (4학년1학기): 캡스톤디자인2 과목 성적 관계없이 이수한 자. (성적증명서 제출) 4. 교내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 (단, 공모전 수상결과를 교수회의에서 심사) 5. 개별 교수 졸업논문 지도 없음.	1. 정보처리기사 또는 이에 상응한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종류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2. 삭제 3. 캡스톤디자인 (4학년 1학기) 과목 이수자 4. 교내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자 - 공모전 수상결과를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사 5. (수정) 졸업논문 희망자는 '졸업논문에 관한 세칙'(3-3-08)에 의거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졸업예정 학기말까지 학과장에게 제출한다. 제출자격은 졸업예정학기에 재학중이거나 또는 졸업학점을 충족한 수료자로 한다. (세칙 제3조) 6. (신규) 학과 교수회의 논의에 따라 졸업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수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졸 업 논 문 에 관 한 세 칙

(졸업논문에관한세칙 3-3-08)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재학중 이수한 전공과목에 대한 지식을 종합 정리하며 자주적 학문연수의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하여 졸업예정자에 졸업논문을 제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졸업논문의 대체) (2008. 5.20)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 실기발표, 기타 학부(과)가 정하는 방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2008. 5.20)

제 3 조 (제출자격) 제출자격은 졸업예정학기에 재학하거나 또는 졸업학점을 충족한 수료자로서 졸업기준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2015.10.27)

제 4 조 (논문작성<작품발표>계획서 및 논문심사청구서 제출) 논문작성(작품발표)계획서는 4학년 1학기초(4월 10일)까지 (단, 후기졸업자는 8월 30일까지) 소속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논문제출(작품발표)자격자로서 복학 또는 재입학자는 복학 재입학이 허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학부<과>의 사정에 따라 제출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2008. 5.20)

제 5 조 (논문지도교수 배정)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는 논문지도교수를 해당학부(과) 전임교수 중에서 최종졸업학년 초까지 배정한다. 단, 졸업논문을 지도할 전임교원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간강사 중에서 배정할 수 있다.(2005. 9.26) (2008. 5.20)

② 삭제(2008. 5.20)

③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여야 하며 논문작성은 개인 연구를 원칙으로 하되 연구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2008. 5.20)

④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시험으로 대치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보고 한다.(2008. 5.20)

제 6 조 (논문제출시기) 논문을 지정하는 규칙 및 작성량에 의하여 매년 10월말 (후기졸업예정자는 7월말) 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과<부>에 따라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7 조 (논문심사) ① 논문심사위원장은 해당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로 하고 위원은 해당학부(과) 교수로 한다.

② 개인별 심사위원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08. 5.20)

④ 논문심사결과는 제출기한 내에 학사지원팀에 제출한다.(2008. 5.20)

제 8 조 (논문심사 결과 조치) ① 논문심사에 합격되고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졸업증서와 해당 학사학위 등록증을 수여한다.

②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수료증만을 수여한다.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가 논문을 재 제출하여 합격되었을 때에는 전 1항 에 준하여 처리하되 그 시기는 논문 제출학기 졸업일로 한다.

④ 통과된 논문 제목은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 9 조 (논문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 논문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2회에 한하여 논문을 재 제출할 수 있으며 매 학기 등록 기간 내에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심사원을 학부(과)에 제출한다.(2008. 5.20)

② 논문 재 제출기간은 첫번째 심사에서 불합격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

제 10 조 (졸업소요학점 미달자에 대한 조치) 제34조 규정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격을 졸업시까지 인정한다. (2009.10.13)
제 11 조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세칙은 1982년 2월 졸업 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199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1998 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변경 세칙은 201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